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(도로공사)]

□ 점검일시 : 2021.01.13 (수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정진혁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현장에 반입되는 건설기계는 다음 사항을 준수
요망

- ① 장비 실명제 카드부착
- ② 정격하중과 제한속도 준수
- ③ 작업 중 출입문 닫고 안전벨트 착용
- ④ 후방 충돌방지봉 설치
- ⑤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 제거
- ⑥ 버킷 등 안전핀 체결

- 건설기계와 작업자가 근접해서 작업할 경우
오늘은 현장소장이 유도자의 역할로 위치하였으
나, 다른 업무로 작업 유도를 못할 경우 다른 유
도자나 신호수 배치 요망

- 현장 작업 차량 중 용접작업이 없음에도 가스
용기를 차량에 적재해서 현장으로 들어온 차량
작업자는 향후 작업에서는 가스용기를 제거하고
현장에 들어오거나, 불가피한 경우 연결된 호스
를 분리하고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가스용기를
단단히 고정하도록 조치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(접
촉 방지), 제203조(안전도 등의 준수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29(건설기계
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구내운반차로 운행 중인 2.5t 트럭은 최대사용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, 경사지 정차 시 시동을 끄고,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고, 고임 목 등을 설치하여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(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), 제203조(안전도 등의 준수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광화문 광장에 컨테이너로 설치한 가설사무실은 화재를 대비하여 확산소화기 설치 요망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41(가설 사무실/창고)



○ 품질관리(토목부)

- 어제 폭설로 노상 시공된 구간이 동상 피해를 받았을 것을 우려하여 흙 섞기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두 번 작업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노상 다짐이 완료된 구간에 한파나 폭설을 대비하여 포장덮개를 준비하고 비상 시 보양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